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
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김성환 (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상수원 관리를 위해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의 실질적 소득지원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으로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, 특별지원사업비를 ‘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사업비’와 ‘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 사업비’로 구분하고,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규모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별표 제3호”를 “별표 1 제3호”로 한다.

제14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특별지원 사업비는”을 “특별지원사업비 중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사업비는 지역 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 사업비를 제외한”으로, “정도”를 “정도, 재생 에너지 보급 현황”으로 한다.

④ 특별지원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가.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·군·자치구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(이하 “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사업비”라 한다)

나.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대상 지역에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사업으로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(이하 “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 사업비”라 한다)

으로 구분한다.

제27조의2 중 “별표 제3호”를 “별표 1 제3호”로 한다.

별표 3 제1호가목1)부터 4)까지를 각각 2)부터 5)까지로 하고, 같은 목에 1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호 나목1) 중 “시설”을 “시설(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포함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표 제3호 중 “상수원관리 지역을 관할하는 시·군·자치구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”을 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”으로 하며,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)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·이용·보급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

가.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·군·자치구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

나.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대상 지역에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·이용·보급하는 사업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수계구간별 목표수질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 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 별 목표수질을 정하려는 경우에 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 정 · 고시하는 주요 상수원의 수 질이 「환경정책기본법 시행 령」 <u>별표 제3호</u> 에 따른 좋음 등급 이상 달성 · 유지될 수 있 도록 정하여야 한다.	제6조(수계구간별 목표수질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별표 1 제3호</u> ----- ----- -----.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14조(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) ① ~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4조(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특별지원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</u> <u>가.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 는 시 · 군 · 자치구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사 업에 사용되는 비용(이하 “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사 업비”라 한다)</u> <u>나.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민 지원사업 대상 지역에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</u>

④ <u>특별지원사업비는 연도별 주민지원사업비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, 위원회가 주민편익시설 및 오염물질정화시설의 설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지원사업비의 지원 대상 지역과 지원 금액을 결정·배분한다.</u> ⑤ (생략) 제27조의2(수질관리 비용의 지원 가능 지역) 법 제22조제1호의3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이상을 유지하는 지역”이란 최근 3년간 연평균 「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」 <u>별표 제3호</u>에 따른 매우 좋음 등급 이상의 수질을 유지하는 지역을 말한다.	<u>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사업으로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(이하 “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 사업비”라 한다)으로 구분한다.</u> ⑤ <u>특별지원사업비 중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사업비는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 사업비를 제외한</u> ----- ----- <u>정도,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</u> ----- ----- -----. 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 제27조의2(수질관리 비용의 지원 가능 지역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별표 1 제3호</u> ----- ----- -----.
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013